

| Legal Update |

미국의 이란 제재 재부과 및 제재 예외국에 한국 포함

지평 이란 · 중동팀

지난 11월 4일, 미국이 이란 핵협정(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JCPOA”)을 탈퇴하면서 허용하였던 180일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1월 5일에 JCPOA 하에서 해제되거나 유보되었던 에너지 및 금융을 포함하여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가 재부과됨을 선언하였습니다. (재부과되는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의 5월 11일 자 [Legal Update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미국의 발표에 따르면 재부과되는 이란 제재는 이란 정권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역사상 가장 강한 제재가 될 것이며, 에너지, 운송 및 조선, 금융을 포함한 이란 경제의 주요 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이하 “OFAC”)은 11월 5일 재부과되는 제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이란과 관련된 개인, 기관, 항공기, 선박 등 700개 이상을 제재 명단에 등재하였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는 동시에,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이란과의 교역 등에 부과하는 제재의 예외(Significant Reduction Exemption, 이하 “SRE”)를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OFAC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대이란 경제제재의 복원과 관련한 OFAC의 정책 방향 및 유권해석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관계로, 본고에서는 11월 5일자 OFAC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우리 기업의 이란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1.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대금 수령 또는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요건 재확인

OFAC 은 90일 또는 180일의 유예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이란 거래처로부터의 대금 수령 또는 대출금 상황이 가능한 요건과 관련하여,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밝혔던 내용을 재확인하였습니다(OFAC FAQ 631, 634). 이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 5월 8일 이전에 문서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물품/서비스의 공급 및 대출/신용의 공여가 이루어졌을 것
- 물품/서비스의 공급 및 대출/신용의 공여가 당시 미국의 대이란제재를 준수한 적법한 것이었을 것
- 유예기간 종료 이전에 이란에 대한 물품/서비스가 완전히 공급되거나 이행되었을 것
- 대금 수령 또는 대출금 상환 등의 과정에 미국인 또는 미국 금융시스템이 관여되지 않았을 것

또한 OFAC은 대금 수령 또는 대출금 상환과 관련한 당사자들이 이상의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신뢰해도 좋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인 대금 수령 또는 대출금 상환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수령 또는 상환 전에 OFAC 또는 미국 국무부에 문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OFAC FAQ 632).

2.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 이후 새롭게 SDN List에 등재된 경우

비미국인(외국 금융기관 포함)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면서 OFAC의 List of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이하 “SDN List”) 또는 국제테러리즘 또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지원과 관련한 리스트에 등재된 이란인과의 중요한 거래에 관계된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이란인이 과거 행정명령 제13599호 리스트(List of Persons Blocked Solely Pursuant to E.O. 13599)¹에만 등재되어 있다가 이후 다른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리스트에 새롭게 등재된 경우를 포함합니다.²

¹ 행정명령 제13599호 리스트는, (JCPOA 이행으로 SDN List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OFAC이 과거 ‘이란정부’ 또

따라서 비미국인이 유예기간 중 새롭게 SDN List에 포함된 자들과의 거래와 관련한 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 OFAC 또는 미국 국무부에 제재 저촉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OFAC FAQ 636).

3. 인도적 물품 및 소비재 공급 관련

(거래 상대방이 이란 금융기관, 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를 포함하여 국제테러리즘 또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지원과 관련하여 SDN List 에 등재된 자가 아닌 한) 농산품, 식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이란에 판매하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미국인이 위 인도적 물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미국 제재에서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소비재를 이란으로 수출하는 거래도 (이란중앙은행 또는 지정된 이란금융기관³, 또는 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를 포함하여 SDN List에 등재된 자와 관계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OFAC FAQ 637).

4. Significant Reduction Exemption 적용 관련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이란과의 교역 등에 부과하는 제재의 예외(SRE)를 부여받은 국가는 향후 180일간 예외 인정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 예외조치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SRE를 받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란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예외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국가들이 이란으로부터 석유·석유제품을 수입하거나 관련 금융거래를 하면서 SRE

는 '이란금융기관'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명령 제13599호 및 Iranian Transactions and Sanctions Regulations (이하 "ITSR") 560.211항에 의해 그 재산을 동결한 자의 리스트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핵협정 탈퇴 이후 행정명령 제13599호 리스트에서 SDN List로 이전된 자는 2차제재(secondary sanctions)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식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이란으로 수출하는 거래 또는 SRE에 따른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² 이 경우 SDN List상 "additional Sanctions Information-Subject to Secondary Sanctions"라는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³ 다만, SRE에 따른 예외를 적용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면, 이란으로부터 석유 등을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이란 운송 부문 및 항구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를 이용한 행위는 제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OFAC FAQ 642).⁴

한편, 외국금융기관이 11월 5일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면서 이란중앙은행 또는 지정된 이란금융기관과 중요한 금융 거래를 하거나 이러한 거래를 지원한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i) 해당 금융기관의 본국이 SRE를 받았고, (ii) 문제가 된 중요한 금융 거래가 양국간의 거래만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며, 그 거래의 결과 이란에 지급할 대금이 해당 금융기관 본국의 계좌에 예치되고 이란으로 반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금융기관이 해당 거래가 국제테러리즘 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지원 관련 리스트에 등재된 자를 위한 중요한 거래이거나 중요한 금융 지원임을 인지하면서 이를 행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됩니다(OFAC FAQ 256).

미국이 한국을 SRE 인정 국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이란 산 원유(콘덴세이트)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한-이란 교역에 활용해 온 원화결제시스템도 유지가 가능하여 비제재품목의 대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본 뉴스레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이란 · 중동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이란 사무소	배지영 변호사 · 이란 사무소장 Tel 98-21-2290-3439 Email jybae@jipyong.com	
본사 이란 · 중동팀	류혜정 변호사 Tel 02-6200-1722 Email hjryu@jipyong.com	이태현 변호사 Tel 02-6200-1788 Email thlee@jipyong.com

<끝>

⁴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국제테러리즘 또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지원과 관련하여 지명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